

# 10.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9-310호 1999. 9. 29

## 개 정 이 유

개발제한구역안에서 위치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 및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의 관리를 위하여 동 경기장 부지내에 쇼핑센터 및 음식점등 일부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,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.

## 주 요 내 용

- 가. 개발제한구역안의 도시공원시설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기념비는 개인(법인)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개발제한구역안의 도시공원내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함.
- 다.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과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중 부산광역시 강서(하키·실내체육관)·금정 및 기장(양궁·실내체육관) 경기장의 시설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슈퍼마켓, 일용품소매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공연장, 전시장, 운동시설 및 관련사무실, 선수 전용숙소, 대형점 또는 쇼핑센터(매장면적 및 부대시설면적은 각각 16,500제곱미터 이내)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·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·군수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있도록 함.

주택회보